

평창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11.20 평창군수(재무과장)
- 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20
- 다. 상 정 일 자 : 2001. 12.21 제91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특
상정·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재무과장 김일래)

가. 제안이유

- 제증명 무인민원 발급기와 복합인증기를 설치운영하고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수정과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정리를 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 민원증명 발급기에 대한 현금징수 추가
(안 제6조)
-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개정에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
규정
- 유기장업법 폐지와 관련하여 유기장 영업허가에 관한 수수료 요율을
삭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박태영)